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181 호

2018년9월28일(금)

여수시보

시정지표

- 1. 시민공감동시정
- 1. 균형있는상생경제
- 1. 사람중심나눔복지
- 1. 품격있는문화관광
- 1. 살기좋은정주환경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8-304호 2019년 여수시 생활임금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8-30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4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8-2158호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
- 여수시 여서동 공고 제2018-37호 여서동 12통 통장 모집 공고 /12
- 여수시 쌍봉동 공고 제2018-86호 쌍봉동 통장(52통) 모집공고 /13
- 여수시 쌍봉동 공고 제2018-87호 쌍봉동 통장(54통) 모집 공고 /16

회 람								
--------	--	--	--	--	--	--	--	--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19년 여수시 생활임금 고시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에 따라 『2019년 여수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9. 28.

여 수 시 장

1. 고 시 명 : 2019년 여수시 생활임금

2. 주요내용

○ 적용시기 : 2019. 1. 1. ~ 2019. 12. 31.

○ 생활임금 적용대상

- 여수시와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 소속의 근로자
-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단, 전액 시비 지원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한함)

○ 생활임금 적용제외자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은 국비지원사업 근로자
-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생활임금액

- 시간급 9,190원

※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고용노동부)

3. 기타

- 2019년 여수시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여수시 총무과(인사팀, 061-659-3121)로 연락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 합니다.

승인 번호	승 인 수리일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신고내역	점용·사용 장소	면적 (㎡)
		주 소	성 명					
2018 -77	2018. 9.28.	순천시 해룡면 송산3길 505 (신대리)	(주)빅스 대표 류성신	2018. 9.28.	2019. 6.30.	교육연구시설(교육 원)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	여수시 울촌면 상봉리 863번지 지선(육지지역)	28 (직접)

2018. 9. 28.

여 수 시 장

공 고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중 상위법(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2호)에 포함되어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을 정비하고 금연사업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 과태료금액 조정으로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며 문구와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기타조항 문구 수정 및 삭제
- 나. 금연지도원 교육지원과 수당.물품지원 근거마련
- 다. 제5조 금연구역 지정범위 중 상위법에 포함되는 금연구역 삭제 및 용어변경

- 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추가
- 마.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삭제
- 바. 금연사업에 공헌한 시민·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사.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권고에 따른 과태료 금액 변경(2→5만원)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18. 9. 28. ~ 2018. 10. 18. (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한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1) 주 소 : 우)59674 여수시 시청서 4길 47(학동) 건강증진과
 - 2) 전 화 : 061) 659-4243 FAX : 061) 659-5840
 - 3) 이메일 : ctjelly@korea.kr
 -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흡연할 수 없는 곳으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박람회 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수욕장
6. 시장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거리 또는 특화거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연구역 해제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금연구역 해제의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이하 “표지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표지판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과태료 부과 등 위반 시 조치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표지판등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 ① 시장은 민간단체, 사업장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경우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금연 관련 법령
2. 금연의 필요성
3. 금연지도원의 자세
4. 금연지도원의 직무
5. 그 밖에 금연지도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연활동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활동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금연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기관·단체, 금연지도원 및 금연활동 자원봉사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라목 2)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 나목 9)에 따라 금연구역

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장 모집 공고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관할 구역의 통장을 위촉코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1명(12통)

○ 관할구역 : 12통(여서로 304, 경남아파트 101동~103동)

2. 신청기간 : 2018. 9. 28. ~ 10. 5. (8일간)

3. 자격요건

- 모집 공고일 기준 당해 통 관할구역 통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사람중에서 주민총회나 공동주택입주자 회의 등에서 선출된 사람이거나 해당통에 거주하는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매사에 솔선수범할 수 있는 사람

4. 통장의 임무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 재난 위험시설 등 사전점검, 각종사건·사고보고, 풍수해복구 및 제설작업 등 지원
-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적격자 》 : 위촉 제외 대상자

- ◆ 통장모집 공고일 기준 민·형사상 사건에 소추되어 조사중인 자
-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 지방세 체납자는 부적격자로 제외

5. 임 기 : 2018. 10. 16.~2020. 10. 15. / 2년간 (1회 연임가능)

6. 제출서류 : 통장신청서, 추천서,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및 포상증명서

7. 문 의 처 : 여서동 주민센터(☎ 659-1475, 담당자 이유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8. 9. 28.

여 서 동 장

통 장 모 집 공 고

쌍봉동 통장 임기만료에 따라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관할 통장을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통장 : 52통장

- 관할구역 : 52통(주은금호 2차 203,205)

2. 공고(접수)기간 : '18. 09. 28. ~ '18. 10. 08. 【11일간】

3. 접수장소 : 쌍봉동주민센터[여수시 흥국로 25(학동)]

4.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통 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나.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5. 신청 제외자

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선출방법

가.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심사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동장 직권임명
나.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선임기준안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동장이 최종선임

7. 제출서류

가. 통장후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추천서 1부
나. 기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할 서류(경력에 따라 별도 추가 가점배정)
▶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 경력증명서, 상훈(표창장 등 사본)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내용 허위판명 즉시 통장 임명을 해임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봉동주민센터 (☎659-1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28.

쌍 봉 동 장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여수시 쌍봉동 ()통장						
사 진 (3×4cm)	성 명	(한자)		생년 월일	(연령 만 세)	성별	남·여
	주 소			거주 기간 ~ 현재(년) (해당 리·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비고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봉사활동 장소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내용		비고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훈격 (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비고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여수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수시 쌍봉동장 귀하

- ※ 첨부 : 1. 주민등록등·초본, 2.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3.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통 장 모 집 공 고

쌍봉동 통장 임기만료에 따라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관할 통장을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통장 : 54통장

- 관할구역 : 54통(주은금호 3차 301,302)

2. 공고(접수)기간 : '18. 09. 28. ~ '18. 10. 08. 【11일간】

3. 접수장소 : 쌍봉동주민센터[여수시 흥국로 25(학동)]

4.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통 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나.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5. 신청 제외자

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선출방법

가.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심사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동장 직권임명
나.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선임기준안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동장이 최종선임

7. 제출서류

가. 통장후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추천서 1부
나. 기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할 서류(경력에 따라 별도 추가 가점배정)
▶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 경력증명서, 상훈(표창장 등 사본)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내용 허위판명 즉시 통장 임명을 해임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봉동주민센터 (☎659-1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28.

쌍 봉 동 장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여수시 쌍봉동 ()통장						
사 진 (3×4cm)	성 명	(한자)		생년 월일	(연령 만 세)	성별	남·여
	주 소			거주 기간 ~ 현재(년) (해당 리·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비고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봉사활동 장소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내용		비고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훈격 (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비고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여수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수시 쌍봉동장 귀하

- ※ 첨부 : 1. 주민등록등·초본, 2.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3.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